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요 약 서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의 추가납입이란 무엇인가요?

A: 이 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1)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원이며, 1만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 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4)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200%입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분	납입한도
총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 200%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12 ×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Q: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 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 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60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출금액(인출 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무엇인가요?

A: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7년납	보험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10년납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또한, 총 납입일시중지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 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제6항에서 정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⑦ ②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인하여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다음의 최소 거치기간보다 적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도 “(가입나이 + 연장된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로 자동 연장됩니다.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 거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7년납	3년
10년납이상	1년

⑧ ⑦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회사가 허용한 최대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③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드립니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납입보험료의 한도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월납	7년납	0세~80세	(가입나이+10세)~90세
월납	10년납	0세~79세	(가입나이+11세)~90세
월납	15년납	0세~74세	(가입나이+16세)~90세
월납	20년납	0세~69세	(가입나이+21세)~90세

-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납입보험료의 한도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최저한도
7년납	50만원

10년납 이상	30만원
---------	------

○ 건강진단 : 해당사항 없음.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상품의 구성

-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
 -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II (자동부가특약)
 -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자동부가특약)
 - + 선지급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보험금 지급사유

□ 주계약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별표4(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대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과 약관 제2조의 2(용어의 정의2) 제1항 제5호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이하 “사망시 지급금” 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전 보험기간이면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시 지급금” 에 추가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제1항 에서 정한 “사망시 지급금” 을 지급할 때에는 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은 아래 지급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3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

계약자는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지급내용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종신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계약자 가 선택한 조기집중배수가 되도록 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 급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부부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 에 종신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 년,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70% 또는 100%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 에 상속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확정연금형 (기간선택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 에 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 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 (금액선택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5%, 10 %,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연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을 지급

- 주) 1.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최저로 합니다.
2. 계약자적립액이란 약관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제1항 제4호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3.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내 연복리 1.0%, 5년 초과 연복리 0.7%입니다.
4.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으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계약자는 최소보증지급기간 이상 최대보증지급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며,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0.5단위로 조기집중배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최소보증지급기간”이란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합니다)을 말하며, “최대보증지급기간”이란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연수를 말합니다.
6.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명시된 통계표 상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확정연금형(기간선택형)의 경우 확정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확정지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확정연금형(기간선택형)의 경우 연금의 확정지급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확정연금형(금액선택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2. 확정연금형(금액선택형)의 경우 연금지급 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확정연금형(금액선택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3.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14.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5.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 이내에서 5% 단위로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변경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5% 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16.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은 노후행복자금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17.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또는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8.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되며, 상속연금형은 연금지급 개시 후 만 1년(연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 1개월,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 6개월)이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연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 6개월)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II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연령가산법(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같이 사용가능)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특정 신체부위보장제한부 인수형(1종) 또는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형(2종)을 부가하여 면책기간을 설정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하여 전환하여 줍니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합니다.

전환 가능한 계약의 조건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따르지만,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명시된 유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선지급서비스특약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시 해당)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지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과 5,00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3억원까지로 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 당사자 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제한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제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타인의 사망보장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관련 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 보장계약 적용이율

Q : 보장계약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계약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계약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장계약 적용이율은 연복리 2.5% 입니다.

○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장해위험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	0.00018
40세	0.00057	0.00041
60세	0.00315	0.00163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적립계약 적용이율(공시이율)

Q : 적립계약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적립계약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38%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이율

이 보험의 중도해지이율은 공시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연복리 1.0%, 5년 초과 연복리 0.7% 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Q :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 예시

기준: 남자 40세, 60세연금개시, 10년납, 기본보험료 매월 30만원납입시 (단위: 만원, 만원미만절사)

1) 최저보증이율가정 (5년 이내 연복리 1%, 5년 초과 연복리 0.7%)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금률
3개월	90	81	90.0%	0	0.0%
6개월	180	163	90.6%	54	30.0%
9개월	270	246	91.1%	141	52.2%
1년	360	328	91.1%	227	63.1%
2년	720	660	91.7%	576	80.0%
3년	1,080	995	92.1%	928	85.9%
4년	1,440	1,333	92.6%	1,283	89.1%
5년	1,800	1,675	93.1%	1,642	91.2%
6년	2,160	2,015	93.3%	1,998	92.5%
7년	2,520	2,357	93.5%	2,357	93.5%
8년	2,880	2,702	93.8%	2,702	93.8%
9년	3,240	3,049	94.1%	3,049	94.1%
10년	3,600	3,470	96.4%	3,470	96.4%
15년	3,600	3,575	99.3%	3,575	99.3%
20년	3,600	3,683	102.3%	3,683	102.3%

2) 평균공시이율(2.50%)과 2026년 1월 현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8%) 가정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평균공시이율과 현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정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	82	91.1%	0	0.0%
6개월	180	164	91.1%	55	30.6%
9개월	270	247	91.5%	142	52.6%
1년	360	330	91.7%	230	63.9%
2년	720	669	92.9%	586	81.4%
3년	1,080	1,016	94.1%	949	87.9%
4년	1,440	1,371	95.2%	1,321	91.7%
5년	1,800	1,735	96.4%	1,702	94.6%
6년	2,160	2,107	97.5%	2,091	96.8%
7년	2,520	2,488	98.7%	2,488	98.7%
8년	2,880	2,879	100.0%	2,879	100.0%
9년	3,240	3,278	101.2%	3,278	101.2%
10년	3,600	3,759	104.4%	3,759	104.4%
15년	3,600	4,209	116.9%	4,209	116.9%
20년	3,600	4,715	131.0%	4,715	131.0%

3) 2026년 1월 현재 공시이율 가정 (연복리 2.38%) 가정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현재 공시이율 가정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	82	91.1%	0	0.0%
6개월	180	164	91.1%	55	30.6%
9개월	270	247	91.5%	142	52.6%
1년	360	330	91.7%	230	63.9%
2년	720	669	92.9%	586	81.4%
3년	1,080	1,016	94.1%	949	87.9%
4년	1,440	1,371	95.2%	1,321	91.7%
5년	1,800	1,735	96.4%	1,702	94.6%
6년	2,160	2,107	97.5%	2,091	96.8%
7년	2,520	2,488	98.7%	2,488	98.7%
8년	2,880	2,879	100.0%	2,879	100.0%
9년	3,240	3,278	101.2%	3,278	101.2%
10년	3,600	3,759	104.4%	3,759	104.4%
15년	3,600	4,209	116.9%	4,209	116.9%
20년	3,600	4,715	131.0%	4,715	131.0%

- 상기 해약환급금, 계약자적립액 및 환급률은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

정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를 경우 실제 해약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또한, 실제 해약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과 상이할 경우, 보험료납입일시종지 시 또는 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Q :모집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 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무배당 세이프 초이스 연금보험, 남자 40세, 10년납, 월납 30만원, 60세연금개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모집 수수료율	0.19%	0.04%	0.04%	0.28%

주)

1.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향후 지급되는 것을 추정한 수치이며, 예시를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수수료 안내표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60세연금개시, 10년납, 월납)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 경과기간별 사업비 합산표

1~7년	8~10년	10년 초과
9.234% ~ 9.234%	9.234% ~ 9.234%	1.011% ~ 1.011%

※ 위의 사업비는 주계약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만을 합산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6.13% (18,390원) 7년 초과 ~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6.13% (18,39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 3.10%(9,300원) 납입기간 이후 : 기본보험료의 1.00%(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40% ~ 0.0107% (12원 ~ 32원)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지급관련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노후행복자금 관련비용	매월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0.0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약공제비용(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단위 : 만원, 만원미만절상))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	101	84	68	51	34	17	0
해약공제비율	28.06%	11.67%	6.30%	3.54%	1.89%	0.79%	0.00%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00% (단,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재납입할 경우 최대 30,000원 한도)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금액 (단, 연 4회에 한하여 면제)

주)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
비용은 부가하지 않으며 기타비용은 최대 30,000원까지 부가합니다.